

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
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0일

대통령경호처장

□ **시험일시** : 2026. 7. 18.[토], 13:30~17:30 (1교시 120분, 2교시 60분)

※ (1차 시험 응시자)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(미충족인원은 별도 통보 예정)

□ **시험장소** : 서울 용산고등학교 (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0)

□ **시험시간 및 과목**

구분	시험 시간		비 고
1교시 응시자 교육	12:50 ~ 13:30	40분	12:50까지 시험실 입실 소지품 검사, 답안지 배부 등
1교시*	13:30 ~ 15:30	120분	언어논리영역·상황판단영역
휴식시간	15:30 ~ 16:00	30분	16:00까지 시험실 입실
2교시 응시자 교육	16:00 ~ 16:30	30분	소지품 검사, 답안지 배부 등
2교시	16:30 ~ 17:30	60분	자료해석영역

* 1교시는 2개 과목(언어논리영역, 상황판단영역)이 1개의 문제책으로 합본되어 배부,
시험시간은 120분, 과목별 문제풀이 시간은 구분되지 않음

□ **1차 시험 합격자 발표** : 2026. 8. 19.[수] (대통령경호처 대표홈페이지 및
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사이트 게시)

□ 필수 준비물

가. 응시표 :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통보된 응시표를 출력

나.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원본) 만 인정
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※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필기구 :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 사용불가)

※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,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, 수정테이프 접착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□ 응시자 준수사항

【 일반사항 】

가. 시험당일 12:50까지(2교시는 16:00까지)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(12:00부터 현관 및 시험실 개방)

나.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다.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시험 전일에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
라.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.(시험장 주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)

마.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 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바.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2026.7.17.까지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사.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.

아. 시험 시작 전에 전자기기 소지여부 검사를 진행하며, 검사 시부터는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 여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, 노트북, 스마트워치 및 밴드, 스마트안경, 이어폰, 전자 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,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에 대해 스마트안경 검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.

자.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지정된 시간(시험시작 20분 이후 ~ 시험종료 10분 전)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·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소지품 검사, 대기시간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.

차.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, 과도한 향수 사용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, 시험장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카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-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아날로그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 기능 여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전자기기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, 전자시계, 탁상용 전자시계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타.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파.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【 답안지 기재 및 표기 】

가.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"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"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

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

수 있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: ● / 잘못된 표기:          

나. 빨간색 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
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.

다.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성명, 자필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(표기)하여야 합니다.

- (책형)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,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(1개)을 “●”로 표기해야 합니다.
- (필적감정용 기재)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- (자필성명)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(교체답안지 작성)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상단 책형란에 해당 책형(1개)을 "●"로 표기하고, 필적감정용 기재란, 성명, 자필성명, 응시 번호, 생년월일을 **빠짐없이 작성(표기)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**합니다.(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 처리됨)

라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
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마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**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. (**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**)
- **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** 또는 **불완전한 수정처리**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**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**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■■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【 부정행위 등 금지 】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제7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-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제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(시험 시작 전 소지여부 검사 시 적발될 경우 포함)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다. 특히 **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표 필수 기재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

가. 정답가안 공개: 2026. 7. 18.(토) 19:10 ※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gongmuwon.gosi.kr)

나.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: 2026. 7. 18.(토) 19:10 ~ 7. 21.(화) 18:00

※ (이의제기) 대통령경호처 이메일(pssrecruit@pss.go.kr)로 접수

다. 최종정답 공개: 2026. 7. 27.(월) 18:00 ※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gongmuwon.gosi.kr)

♣ 시험 관련 안내(응시표, 응시번호 등 문의) ☎ 02-800-5518